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 마련 -
- 동의를결·분쟁조정 제도 등 중소기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
- 공공분야 입찰 방지 조치 대상 확대 등 공정경쟁 제도 개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중소기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은 2001년부터 민간 주도로 도입되었고, 공정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CP 등급평가 제도 등을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CP 제도는 그간 법적 근거 없이 하위 예규에 의하여만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CP 도입·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CP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CP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운영상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

②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였다.

현행법은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에 처분시효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동의의결 절차 진행 과정에서 시효가 도과 될 수 있어 동 제도가 제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공정위도 처분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효도과를 우려해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원래 사건의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되거나 이행이 완료되는 때부터 다시 처분시효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③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법은 조정 중인 분쟁사항에 대해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그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조차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제기된 법원(수소법원, 受訴法院)이 분쟁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재량을 갖고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결과를 분쟁조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쟁조정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④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해당 국가·지자체·공기업에게 공공부문 입찰 담합 적발·방지를 위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성격의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은 자료 제출 및 협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기에, 그동안에는 이들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있어서의 담합행위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행 공정거래법 제41조 제1항의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의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을 추가함으로써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치가 보다 용이해졌다.

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관리 업무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공정위 고시에 따라 이루어졌고, 사건부서의 동일한 사건처리 담당자가 이행관리 업무까지 함께 담당함에 따라 시정조치 이행여부 점검을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하고, 공정위가 해당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 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②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③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공정경쟁 질서 확립	④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포함 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참고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CP 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및 범위반행위 예방 효과가 기대되고, 동의의결·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중소기업자 등의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간 CP 제도는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 예규로만 운영되어 왔기에 CP 운영 사업자에게 다양한 유인 수단을 제공하기 어려워 실질적인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에 C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CP 관련 인센티브 부여 등 제도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이들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이행관리 업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CP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등 CP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 개정 공정거래법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선종규 (044-200-4300)
		담당자	사무관	이원섭 (044-200-4303)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121)
		담당자	서기관	양동훈 (044-200-4122)
	경쟁정책국 시장감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경중 (044-200-4327)
		담당자	서기관	배현정 (044-200-4328)

I**개정 내용****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법적 근거 마련 [제120조의2 신설 등]**

□ (개정 배경) 현행법에는 CP* 제도의 근거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유인 수단도 부족하여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한계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이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도입한 자체적 내부 준법시스템(2001년 7월 민간 주도로 도입, 공정위는 CP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2006년 CP 등급평가 제도 도입 및 우수평가 인센티브 제도 운영 중)

** 예규(「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운영 중

□ (개정 내용)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시책 추진 및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CP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 공정위가 사업자들의 CP 운영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 유인을 부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동의의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90조 제10항 신설]

□ (개정 배경) 동의의결* 진행 중 처분시효를 정지하는 특칙이 없어 동의의결 신청이 처분시효 기간 도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위원회의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직접적인 피해보상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구제에 효과적

□ (개정 내용) 동의의결 신청 시 본 사건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가 종료*되는 때부터 처분시효가 재개되도록 규정

* ①신청 취소, ②절차未개시, ③기각 결정, ④이행 완료, ⑤동의의결 취소

3.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제77조의2 신설 등]

□ (개정 배경) 현행법은 소 제기시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도록 하고 있어, 조정 의사는 여전히 있으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기회가 차단되는 문제

□ (개정 내용) 분쟁조정 절차와 소송이 경합할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하도급법에 같은 제도가 기도입되어 시행(22.7.12) 중이며, 금융소비자보호법, 환경분쟁 조정법에도 유사 입법례 존재

- 법원이 소송을 중지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
- 아울러 동종·유사 사건의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

4. 공공 입찰 부당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등 포함 [제41조 제1항 개정]

□ (개정 배경) 현행법은 국가·지자체·공기업 발주 입찰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해당 국가·지자체·공기업에 공공부문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 지방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이하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근거 규정이 없어 이들 기관의 입찰과 관련한 담합행위 감시와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음

□ (개정 내용)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공기업 등을 추가

5. 시정조치 이행관리 법적 근거 마련 [제97조의2 신설 등]

□ (개정 배경)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근거가 공정위 고시*에만 있고 다른 후속 사건처리와 병행하면서 이루어져,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업무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 심사관의 이행 결과 확인 의무 및 피심인의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 등 규정

□ (개정 내용) 시정조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원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업무를 위탁받는 조정원도 사업자·사업자단체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울러, 조정원 내 시정조치 이행관리 담당자에게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형벌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6. ‘속행’ 을 ‘계속 진행’ 으로 변경 (제97조 제1항 개정)

- (개정 내용)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 표현인 “속행”을 알기 쉬운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

<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

구 분	개정 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법적 근거 마련
중소사업자 등의 피해구제 강화	② 동의를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③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공정경쟁 질서 확립	④ 공공분야 입찰 관련 부당 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포함 ⑤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 및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 마련
기타	⑥ 속행을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개정

* ①윤관석 의원안, ②오기형 의원안, ③·④이용우 의원안 ⑤이정문 의원안 ⑥윤준병 의원안 등 6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의결됨

** ③의 경우, 공정거래법 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이상 이용우 의원안), 소비자기본법(박용진 의원안), 약관법(홍성국 의원안) 개정안이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같이 통과함

II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기대 효과>

- 이번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
- (CP 법적 근거 마련)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및 범위반 예방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동의를결 신청 시 처분시효 정지) 제도의 완결성을 높여 절차 악용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절차에 보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여 소비자나 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 도입) 자율적인 분쟁해결 노력 확산과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공공 입찰 부당공동행위 방지 조치 대상에 지방공기업 등 포함)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입찰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이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법 위반 행위로 인해 훼손된 시장의 경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 개정 법률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
 - CP 제도 개선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나머지 개정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

현행	개정안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u>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 <u>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u> ----- ----- ----- ----- <u>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u>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등) ① ----- ----- ----- -----.

현행	개정안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6. 제97조의2제2항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시정조치의 이행관리
6. · 7. (생략)	7. · 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조정 등) ① ~ ③ (생략)	제77조(조정 등)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④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분쟁 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 (訴)를 제기하는 등 조정절차 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 ---- <u>거부하는</u> ----- ----- ---
⑤ · ⑥ (생략) <u><신설></u>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2(소송과의 관계) ① 제7 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 법원(受訴法院)은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현행	개정안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⑨ (생략) <u><신설></u>	있다. 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협의회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90조(동의의결의 절차)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제80조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은 신청인이 제89조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인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한다. 1. 신청인이 동의의결의 신청을 취소한 때 2.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기로

현행	개정안
⑩ (생략)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자가 제9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u>속행</u>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시정조치의 이행 또는 절차의 <u>속행</u>에 대한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u><신설></u>	<u>결정한 때</u> 3. <u>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를결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u> 4. <u>동의를결의 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u> 5. <u>동의를결이 취소된 때</u> ⑪ (현행 제10항과 같음) 제97조(시정조치의 집행정지) ① ----- ----- ----- ----- -----<u>계속 진행</u>----- ----- ----- ----- ----- ----- ----- -----<u>계속 진행</u>----- ----- ----- -----. ② (현행과 같음) <u>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u>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7조, 제14조, 제37조, 제42조, 제49조</u>

현행	개정안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u>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공무원 또는 협의회에서 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또는 제52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u> 제119조(비밀엄수의 의무)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u>1.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 또는 공무원</u>

현행	개정안
<u><신 설></u>	2.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u><신 설></u>	3. 제90조에 따른 동의를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u><신 설></u>	4.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u><신 설></u>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

현행	개정안
<신설>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 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의3(자율준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현행	개정안
	<u>따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에 관한 업무(이하 “평가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u>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 기간 중 평가업무를 행한 경우</u> <u>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0조의2제6항에 따른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u> <u>4.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u> <u>5.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u>

현행	개정안
제12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생략) ②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또는 제90조에 따른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신설> <신설>	6. 그 밖에 휴업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3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제73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0조의2 및 제12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방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고 또는 통지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제3조(소송·조정절차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조치 등에 대한 기간 진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의 진행에 관하여는 제9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